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3.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9. 3. 30
- 다. 상 정 일 자 : '99. 3. 30 (제7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노 양 현
- 나. 개정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은 인하 하여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도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농공단지 입주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주요내용

-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최초 적용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 (제22조의 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자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제22조의 4)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 정 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 경기의 부양과 부실화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우리군의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가

확대되고, 특히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 유도를 통하여 지역경제 부양 기대

-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이기도 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3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그 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2조의 4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주농공단지
2. 도곡농공단지
3. 이양농공단지
4. 동면농공단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제22조의 3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u>(신설)</u>	제22조의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1. <u>농주농공단지</u>2. <u>도곡농공단지</u>3. <u>이양농공단지</u>4. <u>동면농공단지</u>